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있는 업무

구 분	업 무
<p>1. 신용카드업 자</p>	<p>가. 통신판매 및 여행업 나. 카드(전자지급수단) 발급대행 및 결제시스템 제공 다. (삭 제) 라.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 다만, 임대부동산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하고자 하는 부분은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여야 한다.</p> <p>1) 도시계획, 도시미관 등의 이유로 일정층수 이상의 신축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하는 행정관청의 건축행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축된 경우 2) 이미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중 자산인수, 합병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영업장 폐쇄·축소 등으로 인하여 잉여부동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매각 또는 임차 계약 해지시까지 임대하는 경우</p> <p>마. 상품권, 복권 등의 판매대행 및 소유설비 등을 활용한 광고대행 바. 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판매·대여 사. 업무와 관련된 교육, 간행물 및 도서출판 아. 다음에 해당하는 렌탈업. 다만,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기간 동안의 단기 대여는 대여중인 물건이 정비, 수선 등의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전체 렌탈자산의 분기중 평균 미상각잔액(「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발행된 구조화된 금융상품(이하 “구조화금융상품”)을 통해 유동화된 자산 포함)은 전체 리스자산의 분기중 평균 잔액(금융리스채권잔액,</p>

	<p>운용리스자산의 미상각잔액과 구조화금융상품을 통해 유동화된 자산의 미상각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p> <p>1) 리스 취급중인 물건에 대한 렌탈업. 다만, 물건별 렌탈 자산의 분기중 평균 미상각잔액(구조화금융상품을 통해 유동화된 자산 포함)은 해당 리스자산의 분기중 평균 잔액(금융리스채권잔액, 운용리스자산의 미상각잔액과 구조화금융상품을 통해 유동화된 자산의 미상각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p> <p>2) 리스 취급중인 물건 이외의 물건에 대한 렌탈업. 다만, 「법인세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서 중소 렌탈시장 침해 방지 등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정한 품목·업종 및 취급규모 등 취급기준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적정성 심의를 통과한 품목·업종에 한한다.</p> <p>자. 기업의 경영지도 등에 관한 용역 및 경영관리 업무 차~카. (삭 제)</p> <p>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실시권 또는 사용권의 설정</p> <p>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분석·제공 및 이를 활용한 자문업무</p> <p>하. 다른 신용카드업자가 신고한 후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p>
2. 시설대여업자	<p>가. 제1호라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하는 업무</p> <p>나. 다른 시설대여업자가 신고한 후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p>
3. 할부금융업자	<p>가. 제1호라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하는 업무</p> <p>나. 다른 할부금융업자가 신고한 후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p>
4. 신기술사업금융업자	<p>가.~다. (삭 제)</p> <p>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업</p>

을 영위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이 경우 투자규모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자기자본 범위 이내로 한다)

마. 제1호라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하는 업무

바. 다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고한 후 시행령 제17조
의2제2항에 따라 공고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